

제3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08.27.(화) 10:00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김기창 의원 대표발의

2. 제안이유

-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 주요 환경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나.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
- 다.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3조, 제4조)
- 라.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5조, 제6조)
- 마. 환경정책위원회 회의 및 정책반영 (안 제6조~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2항 및 제5항

나. 조례안 예고 (2024.04.12.~ 2024.04.19.) 결과 :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고령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따른 규제 및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대상 업종을 나열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음. 	반영
난개발과 산업폐기물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 자문해야 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 → 미반영사유 : 상위법에 해당 업종에 대한 규제가 있으므로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나열하는 것은 법규의 해석·집행에 혼란을 초래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위원장 당연직은 불합리 의회의 추천권과 시민단체와 전문가 참여를 구체적으로 보장 	반영

5. 검토의견

○ 현재 우리 사회는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보전 문제의 중요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서 환경정책 수립과정에서 환경전문가, 환경활동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런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환경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6. 1. 27., 2021. 1. 5., 2021. 6. 15.>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 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 5.>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